



# 제10차 인권교육 포럼

- 인권과 시민권 그리고 장애인 인권교육 -

- 일 시\_ 2010. 4. 23(금) 오후 4시~6시
- 장 소\_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0층 배움터)
- 주 최\_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 제10차 인권교육포럼 순서

구 분	순 서
개회	개회인사 오 완 호(인권교육포럼 공동대표)
16:00~17:00	<b>1부 인권, 시민권 그리고 한국사회</b> 좌 장 : 심 성 보(인권교육포럼 공동대표)
주제발제	인권, 시민권과 시티즌십 : 개념과 실재 최 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토론	홍 성 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토론	김 성 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17:00~18:00	<b>2부 장애인 인권교육</b> 좌 장 : 배 용 호(인권교육포럼 운영위원)
주제발표	인권교육의 현장 성찰과 패러다임의 변화 김 형 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토론	조 은 영 (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토론	임 성 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종합토론	



# Contents

## 제1부 인권, 시민권 그리고 한국사회

- 인권, 시민권과 시티즌십 : 개념과 실재 ..... 3  
최 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인권, 기본권, 시민권 : 무엇을 말하고 실천하고 연구할 것인가? ..... 11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인권과 시민권 : 개념과 현실 ..... 17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 제2부 장애인 인권교육

- 인권교육의 현장 성찰과 패러다임의 변화 ..... 23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 장애인권교육 현장에서의 논의와 과제 ..... 32  
조은영 (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 활동가)
- ※ 참고자료
- 인권과 시민권 : 개념과 현실 ..... 45  
최 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제1부

○ 인권, 시민권 그리고 한국사회





주제발표

**인권, 시민권과 시티즌십:  
개념과 실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최현

**목차**

권리의 개념  
인권, 시민권과 시티즌십  
근대 국가와 시민권  
시티즌십(citizenship)-권리와 정체성  
마살의 시민권 발전  
시민권의 주목할 만한 변화  
다문화적 권리의 주요 내용

## 권리(Rights)의 개념

- 권리 Right <—> Wrong, Left
- 엄직(廉直)
- jus naturale —> natural law 自然法  
—> natural right 自然權
- 권리=자유

## 인권, 시민권과 시티즌십

- 인권-당위적·추상적 권리  
자연권 또는 천부인권
- 시민권-법적·제도적 권리  
근대 국가가 보장하기 시작했던 권리
- 시티즌십  
시민권과 시민성(정체성과 덕성)

## 근대 국가와 시민권

- 근대국가
- subject → citizen
- 臣民 → 市民 또는 公民
- 시민권
  
- 시민권 → 국민(민족) 정체성 → 국민(민족)형성
- 근대 국가=nation-state
- 민족국가 또는 국민국가

## 국민-국가의 성립, 발전, 변화

- 개념: 미국의 독립 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 발전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국제 질서의 지배적 형태가 된 근대 국가. 평등한 시민권, 헌법, 경계가 분명한 영토를 특징으로 한다.
- 시민권(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교육을 통한 시민의 양성.
- 수평적 대중 문화(민족문화)의 보호.
- 산업의 보호와 노동력의 안정적 제공.
- 국방과 국제 관계의 기본적 주체.

## 근대적 시민권 제도의 역할과 한계

### • 역할

1. 시민의 권리와 의무
2. 정체성 형성 — 국민과 민족의 형성 (류큐 사례, 남미 사례 등)
3. 민주적 공화주의의 토대

### • 한계

1. 시민의 제한
2. 근대 원리 배반-속지주의 또는 속인주의
3. 외국인의 인권 침해-배제 또는 전쟁

## 시티즌십(Citizenship)의 개념: 시민권과 시민성

- 개념: 민주적 정치 공동체의 성원(시민)으로서의 지위, 자격 또는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

### • 주요 측면:

1. 국적,
2. 시민이 갖는 권리와 의무,
3.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 그리고
4. 시민의 의식과 실천(정체성, 덕성, 능력 및 참여).

## 마살의 시민권 발전 과정: 사회 갈등 완화의 기제

- 18세기 자유권적 기본권(civil rights) 발전: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 재산권 보장
- 19세기 정치권(political rights) 발전 :  
선거권과 피선거권 확대
- 20세기 사회권(social rights) 발전 :  
교육권과 복지권 도입

## 시민권의 주목할 만한 변화

- 시민의 내용적 발전:  
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등 포함.-모성보호권,
- 다문화 시민권 또는 집단적 시민권의 발전:  
관용적 시민 덕성의 강조.
- 국경을 뛰어넘는 시민권의 발전:  
EU 등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 및  
외국인과 시민의 차별 약화.



## 다문화적 권리 제도(citizenship)의 주요

### 내용

#### 1. 자치권과 집단 대표권

- 소수 종족이 스스로를 위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적 관할권 또는 정치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소수 종족이 자신의 대표를 참여시킬 권리

#### 2. 다문화권(Multicultural Rights)

- 소수 종족이 주류 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차별이나 불이익의 위험 없이 자신들의 신체적·문화적 특징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

#### 3. 차별보상권

- 과거 또는 현재에 소수 종족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차별을 보상하고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소수자 집단에 게 일정한 특권을 제공받을 권리
- 예: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 4. 거부권(veto p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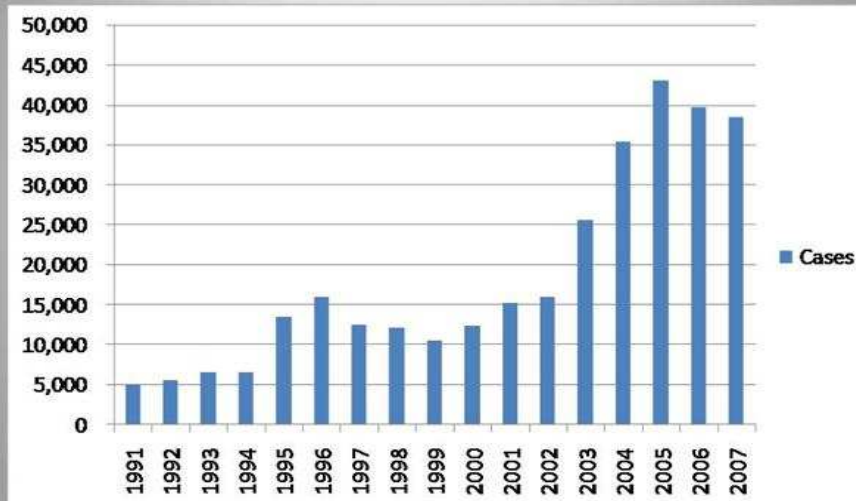
## 시민권 및 다문화적 권리를 둘러싼 쟁점

- 촛불집회- 집회 및 시위의 자유 vs. 재산권
- 인터넷 실명제- 표현의 자유 vs. 개인보호
- 히잡- 소수자 권리 vs. 여성의 평등권
- 성노동자?- 신체와 계약의 자유 vs. 여성인권 침해
- 다문화 권리는 역차별이 아닌가?
- 다문화 권리가 분리를 강화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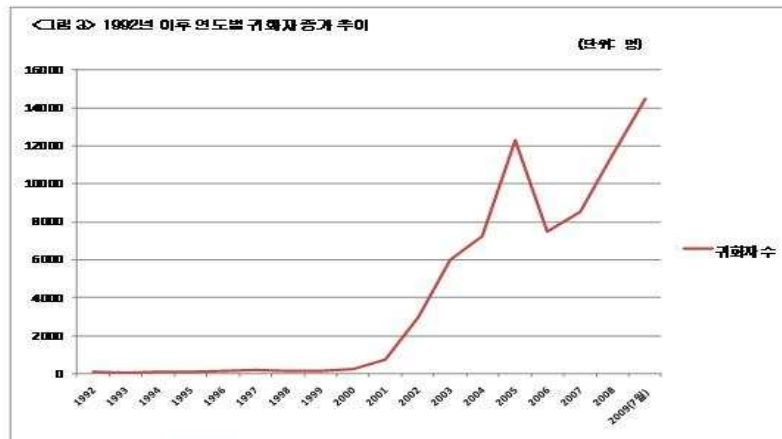
## 외국인체류자 증가

- 외국인입국자
- 2백만(1987년)→ 532만(2006년)
  
- 외국인노동자
- 6,409명(1987년)→ 266,301명(1999년)
  
- 2007년 8월 체류외국인 100만 명 돌파
- 그 중 장기 체류 외국인은 724,967명

## 국제결혼 건수



## 1992년 이후 연도별 귀화자 증가





토론 1

## 인권, 기본권, 시민권 : 무엇을 말하고 실천하고 연구할 것인가?

홍 성 수(숙명여대 법학부)

### 1. 인권, 기본권, 시민권의 개념

#### 1) 인권

- 인권(human rights, Menschenrechte): 인간에게 부여된 초실정적 권리(자연권)
- 내용 : ① 시민/정치적 권리 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③ 제3세대 권리(연대권, 발전권, 환경권 등)
- 인권의 특징 : 초역사성, 초실정성, 초국가성, 보편성, 절대성, 불가분성, 무조건성

#### 2) 기본권

- 기본권(fundamental rights, constitutional rights, Grundrechte; 기본적 인권<sup>1)</sup>) :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 (홍성방, 김선택, 박찬운, 성낙인, 이봉철, 전광석, 정종섭, 이준일)
- 기본적 인권 = 기본권 (정종섭, 허완중)
- 내용 : ① 인간으로서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② 평등권, ③ 자유권, ④ 참정권, ⑤ 사회적 기본권(노동권, 교육권 등), 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⑦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환경권 등)

---

1)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성질 :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헌법소원의 근거
- 특징 : 국가 단위의 헌정질서에 의해 정립된 권리
- 하지만, 헌법이 말하는 “기본적 인권”(기본권)의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1항(헌법이 열거하지 않는 권리들)에 의해 엄격한 실정성의 요청은 완화되어 있음

※ 인권과 기본권의 상호 포함 관계

- 인권의 일부가 기본권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상 인권이 기본권보다 그 범위가 넓음
- 하지만, 기본권 중 참정권(공무담임권, 선거권, 국민투표권), 청구권(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등은 인권에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움 (→ 전국가성, 자연적 권리성이 없음)
- 사회권이 자연권적 성질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기본권과 인권을 구분없이 사용하기도 함 (권영성, 구병삭, 독일학계)

### 3) 시민권

- 시민성/시민권(citizenship, citizenship rights): 민주적 정치 공동체의 성원(시민)으로서의 지위, 자격 또는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 (최현)
- 내 용 : ① 국적 ② 정치적 공동체와 시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  
③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④ 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갖추어야 할 능력
- ‘사회가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와 의무에 기반을 둔 사회적 멤버십’ (Marshall)
- ‘권리와 연계되어 있는 의무’, ‘시민적 지위의 법률적, 제도적 표현’,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한 자격 및 요건’ (Mouffe)
- ‘시민의 소속, 시민의 권리, 시민의 자격’ (서관모)
- 시민권(citizenship rights; 시민적 권리)의 발전 (Marshall): 18세기 자유권(civil rights; 공민권; 시민적 권리), 19세기 정치권(political rights), 20세기 사회권(social rights)
- 시민권의 특징: ‘헌법’이나 ‘국가’보다는 ‘정치공동체’를 상정
- 권리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권리-의무 관계, 시민의 자질-능력을 포함한 개념

- 시민권 논의의 발전1 : 시민성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시민권 논의의 발전2 : 탈국가적 시민권 (이철우), 다문화적 시민권, 집단적 시민권, 다문화적 권리제도, 지구시민권

<표 1> 인권, 기본권, 시민권의 비교

	인권	기본권	시민권 (시민성)
정의	인간에게 부여된 초실정적 권리	헌법에 의해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권리	민주적 정치 공동체의 성원(시민)으로서의 지위, 자격 또는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및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
내용	① 시민/정치적 권리 ②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③ 제3세대 권리 : 연대권, 발전권, 환경권	① 인간으로서의 존엄권과 행복추구권, ② 평등권, ③ 자유권, ④ 참정권, ⑤ 사회적 기본권(노동권, 교육권 등), ⑥ 절차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 ⑦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환경권 등)	① 국적 ② 정치적 공동체와 시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 ③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④ 시민의 자질과 능력
성질	천부적 권리, 자연권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헌법소원의 근거	정치공동체 성원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특징	초역사성, 초실정성, 초국가성, 보편성, 절대성, 불가분성, 무조건성, 이념성, 불명확성	국가 단위의 헌정질서에 의해 정립된 권리	‘국가’가 아니라 ‘정치공동체’를 상징 ‘시민으로서의 자격’, ‘권리-의무 관계’, ‘시민의 자질-능력’을 내포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 탈국가적 시민권의 문제

※ 국제인권과 기본권(헌법)

- 조약과 관습국제법규는 헌법과 동순위 (최재훈)
- 강행규범만은 법률보다 최소한 상위 내지 헌법보다 높은 가치 (김대순)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 하위, 법률 우위 (계희열), 법률과 동위 (권영성)
- 국회 동의받은 조약은 법률, 그 외의 조약이나 행정협정은 법률보다 하위 (김철수, 계희열)

※ 인권구제의 근거

- 헌법재판소와 법원: 헌법상 기본권
- 국가인권위원회: ‘헌법,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 ‘국제관습법’<sup>2)</sup>

## 2. 인권, 기본권, 시민권을 말하고 실천하는 것

### 1) 인권과 기본권

A) NEIS는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B) NEIS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기본권을 말하는 것 : 우리 헌법질서에 의해서 보장받는 효력있는 규범임을 강조할 수 있음
- 인권을 말하는 것 : 천부인권성, 보편성을 강조할 수 있음
- 인권의 기본권화 : “인권을 실정헌법상의 권리인 기본권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까닭은 인권의 불명확성과 강제성에 있다” (이준일)

---

2)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동법 제2조 1항)

→ ‘기본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헌법학에 의해 충분히 연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은 ‘인권’을 말하고 실천하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 단체이름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2) 기본권과 시민권

### i) 국가와 정치공동체

- 기본권은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의 권리이고, 시민권은 ‘정치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
- 근대사회에서 정치공동체는 ‘근대국가’이므로 기본권과 시민권의 내용은 사실상 일치
- 하지만 시민권에서 ‘정치공동체’의 개념은 일국을 넘어선 ‘초국가적 공동체’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국적 시민권, 세계시민권 등의 개념이 발전될 수 있고, (헌)법학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음 (→ 시민권 논의의 독자성1)

### ii) 자격 문제

- 기본권 논의에 비해 시민권 논의는 시민으로서의 자격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임
- 사회적 소수자의 시민으로서의 자격 배제와 시민의 내용적 발전
- 시민권 논의에서는 시민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자의 문제가 대두됨 (→ 시민권 논의의 독자성 2)

### iii) 권리-의무 관계

- 기본권 논의에서는 국민의 권리는 반드시 의무와 대칭되지 않으나, 시민권 논의에서는 권리-의무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춤 (→ 시민권 논의의 독자성 3)

iv) 자질-능력에 대한 논의

- 기본권 논의와 달리 시민권 논의에서 시민성에는 시민의 의식과 실천, 시민의 덕성, 시민의 능력, 시민 참여, 바람직한 행동규준, 연대와 정체성 등이 포함됨 (→ 시민권 논의의 독자성 4)
- ‘기본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헌법학에 의해 충분히 연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은 ‘시민권’을 말하고 실천하고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 3. 인권, 기본권, 시민권을 연구하는 것

<표 2 : 인권연구, 국제인권법 연구, 기본권 연구, 인권법, 시민권 연구의 비교>

	연구분야	학문 분과	특징
A. 인권연구 <sup>3)</sup>	자연적 권리로서의 인권에 대한 연구	철학, 사회학, 정치학 등	
B. 국제인권법 연구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는) 국제인권에 대한 연구	국제(인권)법학	
C. 기본권 연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에 대한 연구	헌법학 (+ 형사법학 등 실정법학)	
D. 인권법 연구	철학적 “자연적 인권연구A) + 국제인권법 연구(B) + 기본권 연구(C) <sup>4)</sup>	학제적 연구 (국내법학 + 국제법학 + 인문사회과학)	인권위 연구, 인권구제연구 등이 독자적 연구영역으로 다뤄짐
E. 시민권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적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지위, 자격 (탈국가적 시민권 논의; 소수자 시민성 논의)</li> <li>- 권리와 의무</li> <li>- 시민권 관련 제도</li> <li>- 시민의 의식과 실천, 시민의 덕성, 시민의 능력, 시민 참여, 바람직한 행동규준, 연대와 정체성</li> </ul>	사회학, 정치학, 역사학 등	탈국가적 시민권, 소수자 시민성, 시민의 덕성/능력/의식/실천 등의 논의가 독자적 연구영역으로 다뤄짐

3) 이 경우 좁은 의미의 ‘인권연구’를 의미하는 것. 넓은 의미의 인권연구는 오히려 B, C, D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4) 인권법 연구가 A, B, C를 동일한 비중으로 다룬다는 것은 아니고, B와 C를 중심에 두면서, A를 배제하지 않고 일의적으로 다룬다는 뜻.

## 토론 2

## 인권과 시민권 : 개념과 현실

김 성 인(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난민인권센터라는 단체의 활동을 통해 인권 이슈를 매일 접하지만 점점 하나의 업무로 매몰되어 가던 차에 이론적으로 다시 정립하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들과 좋은 글을 발표해주신 최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토론 요청을 받고 난민단체에 있으면서 인권과 시민권의 관계에 대하여 풀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었던 터라 주저하지 않고 토론에 응했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입장이라 아무래도 이론보다는 인권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실천적인 문제에 중점을 두어 제 생각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글을 통하여 인권의 원리를 인권은 시민권의 형태로 국가라는 정치적 기구 및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주권자인 시민과 시민권이라는 수단 그리고 권리보호 의무를 가진 국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과 시민권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인권이 현실화되는 핵심요소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패하거나 인권보호 책임을 부정하는 실패한 국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대 국민국가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권 제도를 확립해 갔지만 다른 한편으로 배타성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자국민을 무자비하게 희생시킬 수 있음을 봐왔고 국민국가가 자신의 영역에 속한 시민의 인권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게 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권을 이야기할 때 국가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국가로 인해 그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이 국가에 양도한 주권을 회수하고 그 영역을 이탈하는 난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국민국가체제는 지구상의 모든 육상 영역을 국민국가의 배타적 주권이 지배하는 국경으로 구분하여 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국가의 보호를 원치 않거나 받을 수 없어 이탈한 난민은 다른 국민국가의 영역에 포함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들을 누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의 과제가 있습니다. 물론 난민협약을 통해 국제적인 보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의 발생이 던지는 문제 제기는 근대국민국가를 형성하게 만든 시민과 국가 간의 계약 자체가 파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권을 통해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장받는 기획 자체에 흠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시민권의 주목할 만한 변화로 다문화적 권리를 말씀하였는데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다문화와 어떻게 구분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국가는 문화나 종족에서 다른 소수 집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국가의 시민 중 소수자 집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적 권리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때문에 다문화적 권리는 통치전략 차원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말하는 다문화는 시민권 밖에 존재하는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수자 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설명하며 다문화란 용어를 사용하기엔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다문화의 의미와 해석의 차이가 크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한국사회에서 정상시민의 범주에 들지 못한 여러 소수집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다문화적 권리로서 인권에는 격차가 있습니다. 어느 집단은 정체성 회복을 위해, 또 다른 집단은 가장 원초적인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의 유무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문화적 권리에 있어 소수 집단이라도 시민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탈근대적 시민권 제도를 모색하면서 초국민적 정치 공동체와 세계 시민권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민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혁을 통해 ‘이성적이며 자율적인 인간’이라는 근대적 인간관을 뿌리내리면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인권이 지향하는 가치를 일반화 시킨 것처럼, 탈근대적 인간관과 인권의 가치가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대적 국민국가가 제공하는 인권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식이 아닌 새로운 차원의 인권개념이 먼저 정립되고 이에 적합한 제도로서 시민권이 제시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초국민적 공동체, 초국민적 시민권 제도를 상상하는데 있어 집단인지적 시민권제도, 다문화 시민권 제도, 영주권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가치와 인권개념이 있어야 할지,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제2부



○ 장애인 인권교육



주제발표

## 인권교육의 현장 성찰과 패러다임의 변화

— 화성에서 온 ‘인권’과 금성에서 온 ‘인권교육’, 그 갈등과 화해<sup>5)</sup> —

김 형 수(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아빠가 담배를 비벼 끄고는 새 담배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슈나이더 씨의 말을 들으며 계속 머리를 흔들었다.  
“슈나이더 씨, 평화를 믿지 마세요.”<sup>6)</sup>

### □ 인권 氏, 인권 교육을 믿지 마세요.

#### # 현상 1. 인권교육, 시장이 형성되다.

2007년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sup>7)</sup> 이후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이 의무화되고 장애인 단체나 활동가들이 인식하기도 전에 기업을 상대로, 주민을 상대로, 각종 교양강좌를 열던 전문 단체나 종교 기관들이 그 주체들을 하나 둘 씩 장애인 인식 개선이나 장애인 인권교육으로 내걸면서 인권교육을 ‘사업’으로 경영하고 경쟁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겠으나, 그 인권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사업으로서의 지속성과 수익성 제고라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렵기 때문

5)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Love Lesson 99, 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 패러디.

6) 한스 페터 리히터(Hans Peter Richter)의 『그 때 프리드리히가 있었다』 (출판 보물창고 펴냄 | 2005.08.25 발간 108쪽 발췌)

7) 『공공기관 근무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된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의무화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에는 아직도 계류 중이다. (2007년 10월30일,법률신문)

에 그 목적과 목표를 근본 변경하지 않는 한 그들의 인권교육은 교양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재미있고 감동적이며 동시에 향후 계속해서 의뢰를 받을 수 있는, 부담 없는 것만이 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 # 문제 제기 1. 수익성과 지속성을 추구하는 인권교육의 사업성은 괜찮은가?

그렇다면 그런 인권교육을 아무리 많이 시간 동안 받는다 한들, 그 인권교육을 재미있게 받은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차별없이 할 것이며, 장애인 직원을 인권의 원칙에 맞게 대우하며 그 기업의 직원들이 장애인을 동등한 조직 구성원으로 관계 맺을 수 있을 것인가?

민감한 문제지만 사업과 경영으로서의 인권교육에 수익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와 파트너쉽이나 공모사업을 논외로 하더라도 지난 3년 동안 장애인 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인권교육이란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급증한 것을 단순히 시대의 요구사항이라고만 하기엔 좀 더 냉철한 분석과 비판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을 사업성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경우 - 효율성은 증가하겠지만 - 에 발생하는 가장 큰 폐해는 교육 방법이나 시간들을 교육 의뢰자의 입장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위험성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인권교육의 원칙에 따라 그 과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뢰자의 편의에 따라 종속되는 위험이 있다.

### # 현상 2. 장애인에 관한 모든 교육은 인권 교육인가?

각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일반적으로 그 기관 재량껏 ‘장애인이해교육’이란 이름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그 장애인이해교육이란 것이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인권교육에 전적으로 맞느냐하는 것은 논쟁할 수 있지만, 각 교육청의 ‘장애인이해교육’이 전혀 인권교육이 아니더라도 규정할 수도 없다.<sup>8)</sup> 또한 ‘장애인이해교육’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교육은 각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주로 사회재활팀에서도 주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빈번하게 의뢰된다. 최근에는 이런 장애인이해교육을 각 지역사회 의 장애인자립생활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이같은 장애인이해교육을 진행하려고 경쟁을 하며 교육청이나 복지관에 공식적으로 참여 시켜 줄 것을 종종 제안하기도 한다.

## # 문제제기 2 장애인당사자는 인권교육의 전문가인가?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인권교육에 충분한 준비를 하거나 훈련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인권의 당사자라고 해서 해당 인권을 잘 안다거나 인권교육에 전문성이 담보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훈련되지 않은 장애인 당사자의 경험과 욕구가 장애인이란 사회 약자의 인권과 차별로 전부 환치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인권교육의 전문성 및 농도는 바로 그 인권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다.

또한 인권교육 안에 장애인이해교육과 인식개선교육이 일부 포함될 수는 있지만 장애인이해교육과 인식개선 교육이 인권교육이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sup>9)</sup>이다.

동시에, 장애인의 몰이해와 인식부족은 장애인의 차별과 소외의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며 장애인 당사자 개인이 자신의 장애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거나 장애인 전체의 인식부족을 대변할 수도 없다.

### 사례 1. 사회복지서비스가 인권보다 우선한다?!

중학교 때 발병한 정신분열증으로 정신장애인 등록을 한 청소년이 올해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다. 수능에서 평균보다 높은 성적을 얻었지만 혹시 모를 입학거부와 대학 적응을 위해 면접이 없는 대학에 지원을 했으나 뛰어난 전공 실력과 공부에 대한 열망으로 훌륭하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학교 친구나 교수

8) 그리고 아쉽게도 아직 많은 교육 관료들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인성교육’이나 ‘도덕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의 인성과 도덕이 높아진다고 해서 장애인학생들의 교육권이 인격적으로 그 질이 높아질지는 의심스럽다. 국가와 교육가, 활동가, 그리고 당사자, 그리고 당사자 가족과 다양한 관점에서 인권교육이 존재하고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그것이 성과이든, 실적이든 ‘인권’ 자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가?

9) 교과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실적을 보고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강제했다는 것은 의미있는 것이지만 그 강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가 모니터링 하는 것도 인권교육의 몫일 것이다.

누구도 그가 정신장애인이란 것을 알지 못했고 그의 학업 능력을 의심 받지도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그가 사회적응과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해 다니던 사회복지 기관 사회복지사가 갑자기 학생의 학과장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그 학생이 정신 분열증임을 알리고 특별한 배려를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나 가족의 동의 절차는 전혀 없었다. 그 사회복지사가 전화를 한 이유를 알아보니, 그 교수에게 이해를 구하고 배려를 받지 않으면 정신 분열로 인한 사고의 단절이 심해질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나 그 장애인 학생은 그 누구보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업 성적도 최우수 수준에 있었으며 정신장애로 인한 어떤 지원을 요구하거나 어떤 어려움, 불안을 토로 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의 그 전화로 인해 그 학과의 교수 모두는 그 학생이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 장애인임을 알게 되었다.

### # 문제제기 3. 장애인 관련 전문가들은 인권교육도 전문가인가?

무엇보다 민감한 개인 질환에 관한 정보를 왜 그 사회복지사는 실정법까지 어겨가면서 - 당사자의 동의절차 없이- 그 교수에게 알려주었을까? 그 전문가의 판단은 가족과 당사자가 본인의 장애를 감추는 것은 그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야 할 문제이며, 본인은 그 교수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지원과 배려없이 그 정신장애인학생의 장애와 불안, 그리고 사고의 단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 사정(査定)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의욕이 앞선 일부 사회복지사의 단순 실수라고 보기엔, 그 당사자가 감내해야할 낙인과 차별의 크기가 책임질 수 없는 폭로가 되어버린 Outing 이었다. 그 아웃팅의 원인은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인권보호보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우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장애인 당사자의 감수성 보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서비스가 바로 '인권'의 완성이라고 혼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와 전문성이 인권의 원칙이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이 될 수 있다<sup>10)</sup>. 그러나 국가와 대중들은 사회복지사



와 의사, 또는 특수교사들에게 그들의 전문성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그들을 인권옹호자로 생각하거나 인권교육을 실제로 맡겨 버린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전문가 스스로 본인도 인권적인지 아닌지 점검하거나 의심보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다.

□ Pride! Disability“Enjoy! Disability“Power! Disability<sup>11)</sup>  
= Personality, Culture = Rights

# 자신의 인권에는 민감, 그러나 타인의 인권은 둔감?

한 때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 동네 유치원 근처에는 가보지는 못하고 어느 미술학원 한 모퉁이에서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선긋기 연습만 해야만 했던 아이. 입학 통지서도 받지 못하고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수십 차례 초등학교 입학을 거부 당했던 아이. 교육청에다가 헌법 조항하나 달랑 들이밀고 겨우 입학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던 아이. 그 과정에서도 엄마 등에 업혀 저 외진 장애인시설의 문 앞에서 몇 시간이고 주저하며 고민했던 당신의 얼굴을 응시 했던 아이. 김형수란 이름보다 뇌성마비라는 병명이, 병신이란 별명이, 장애인이란 분류가 더 익숙한 필자가 위에 언급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와 실수와 저급한 감수성을 갖고 있지만 10년 넘게 인권활동가로 5년 넘게 인권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언제나 긴장되고 불안하다. 그 긴장과 불안은 사람들이 나의

10) 어느 영화관 운영자가 새로운 관람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영화관을 다시 개보수 작업을 했다. 지역의 장애인을 새로운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설 투자를 한 것이다. 그는 장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로 영화관이 들어찰 것을 기대했다. 기대대로 많은 장애인이 영화관을 찾았으나 그 영화관을 얼마 가지 않아 파산하고 말았다. 이 영화관이 파산한 이유는 무엇일까?

11)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에서 2007년 무장애일터만들기 NGO 기관 순례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용한 모토이자 캠페인. 그 중에서 Pride! Disability는 장애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뜻하는 Disability Pride의 변용이다. Disability Pride는 장애학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기도 하다. ‘장애와 자부심(Disabled and Proud)’이란 모임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Disability Pride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인 부분에서의 다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라는 것에서 인간으로서의 위엄과 자부심을 갖는 것이다 우리의 장애가 다양한 사람의 모습 중에 일부로서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공표하는 것이고 장애에 낙인을 두는 사회구조에 대한 도전이며, 오랫동안 장애억압적인 사회가 규정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믿음과 느낌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자유케 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Sarah Triano 2004-” 『장개 2007 vol 27 11p』

‘장애’를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나의 ‘고통’의 크기를 인권의 크기로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이었다. 그것은 당사자로서 장애인의 인권에는 민감하나 다른 영역과 다른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는 둔감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기도 하다. 장애인과 다른 소수자의 인권과 이해 관계가 충돌했을 때, 나는 단순한 이해 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인 ‘인권’의 눈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와 함께 장애인 당사자로서 가지는 인권의 확신과 입장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사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격 받거나 도전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존재한다. 내 개인의 장애가 강제로 ‘사회화’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내가 사람들 앞에 민망하게 넘어질 것을 늘 상상하면서도, 공격받고 비판받음에 두려워하면서도 강의에 나서는 것은 그렇게 견디는 것 자체가 인권교육의 존재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 #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보호하게 하는 것 - 당사자의 인권교육 참여는 열려 있는가?

장애인이라는 인권 당사자의 자존감을 보여 주는 것,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자신의 장애가 내 개인의 육체적인 고통임은 인정하면서도 그것 자체가 내 인격과 내 자신의 일부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권당사자의 존재성, 개별성, 정체성을 긍정하게 하는 것이 인격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은 장애인을 배려와 이해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하거나 불행이나 불편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인권교육을 바라보는 장애인 당사자가 인권교육 그 자체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느냐, 인권교육으로 그들의 문화<sup>12)</sup>를 공고히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장애체험이 인권교육의 좋은 도구일 수도 있지만 장애를 고통으로 느끼게 하는 도구일 수도 있으며 ‘장애체험’이 인권교육에서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고 방법론이 있는지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에 소홀<sup>13)</sup>했다는 것이다. 물론 미시적인 인권교

12) “아무리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고 해도 물리적 장벽이 제거되고 거리에 저상버스가 넘쳐나도, 장애인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장애인을 보고 수군거리는 아이들의 소리가 남아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낯선 존재로 바라보는 이상, 장애인에게 우리 사회 역시 낯선 존재일 수 밖에 없다.”<sup>1)</sup>

육 과정에서는 인권교육 강사 모두가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고 성찰하고 있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인권교육 진행자들 중에 인권당사자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단순히 인권교육 역사의 짧음으로 변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의 절박성, 시급성, 효율성 때문에 인권교육을 상호 소통이 어려운 사이버 교육으로 대폭 늘렸던 것은 위에 적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그 교수를 면담하지도 않고 전화로 아웃팅 한 것과 같은 측면도 동시에 가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권 교육을 외주화 하는 것도 그 인권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인권 당사자의 정체성을, 문화<sup>14)</sup>를 훼손시킬 위험이 있다.

요컨대, 인권교육의 양의 확대, 효율성, 제도화는 인권을 더욱 많이 보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인권 당사자의 참여와 주체성을 더욱 약화시킬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비장애인의 인권교육에 욕심을 내는 만큼 장애인 당사자를 인권교육의 전문가로 길러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인권교육 절박성만큼 당사자의 참여를 같은 무게로 느끼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애자라는 말이 병신이란 단어가 놀림말이 되거나 비하어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농담으로 이용될 수 있을 만큼 장애인 스스로 자부심과 파워를 갖느냐 하는 결론일 것이다.

## □ 당신의 편견에 도전하라. 아니면 그것들이 당신에게 도전할 것이다.<sup>15)</sup>

인권교육에서 장애인인권교육이라고 따로 지칭하는 것 역시 많은 고민이 있다. 실무에서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으나 인권교육은 말그대로 ‘인권’교육이어야 하며 장애인은 인권교육의 목차이거나 주제어 이거나 태그일 뿐이다. (그래서 본 원고에서도 장애인인권교육이라고 굳이 나뉘서 표현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장애인 당사자는 그만큼 다른 당사자들의 인권에도 민감하고 해박한 것일까?

13) 장애체험에 대중적인 페러다임은 아직도 장애인날의 행사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14) 자신의 장애가 인생의 멍에나 고통이 아니라 뛰어난 문화 콘텐츠, 아이콘으로 변환시킨다면 장애인의 장애를 기적과 구원의 대상이 아닌 향유하고 즐겨야 할 예술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비장애인으로 하여금 그 문화를 닮게 할 수 있다면 장애인 문화는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5) 미국 드라마 스타트렉 엔터프라이즈 시즌 1기 4부 중에서

시대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기존의 교양강좌 리더쉽 강좌를 장애인 관련 강좌로 콘텐츠를 바꿔 인권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장애인단체, 사회복지 단체의 많은 사람들의 인권감수성과 기법의 괴리와 딜레마는 누가 모니터링하고 지적하고 있는가?

장애인이나 당사자들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인권에 대해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의사가 전문성이 높다하되, 환자의 인권에 대해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없듯이 장애인관련 전문가는 말그대로 직업적인 전문가일 뿐이다. 오히려 장애인과의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더욱 크기 때문에 그들의 전문성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인권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그 전문가들은 존재했는데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인권교육이란 단어 자체가 언급되고 구체화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임을 상기하라.<sup>16)</sup>)

인권교육은 프로그램이 되어서도, 사업이 되어서도 실적을 위한 통계가 되어서도 아니된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되도록 현황 등을 표현하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비장애인 전문가들이 장애인당사자성이나 결정권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짜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특히 발달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 영역에서) 인권의 테이블에 이유고하를 불문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발언하고 기획할 수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인권교육인가?

## □ 그 때 그 곳에 ‘인권교육’은 어디에 있었나<sup>17)</sup>?

정작 중요한 것은 제도의 미비나 인식의 편협함이 아닐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 스스로 그 인권교육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실적으로만 만드는 것을 경계해해 하지 않을까

16) 90년대 사회복지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사회복지전공교수의 성추행사건이후에도 최근 들어 다시 이와 비슷한 인권위 진정사건이 계속 된 것은 사회복지계의 전문성 부족일까, 도덕성 부족일까?

17) Damals War Es Friedrich (1980) 『그 때 프리드리히가 있었다』 라는 히틀러 독재 시대를 다룬 작품을 써온 한스 페터 리히터의 장편소설의 원제를 빌려옴. 이 작품으로 1961년 청소년서적상을, 1993년 포켓북 금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나치의 탄압을 받는 유대인 소년 프리드리히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친구인 독일 소년이 풀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프리드리히를 도와줄 수 없는 무기력한 독일 소년의 눈으로 유대인 탄압의 비극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장애인들은 그냥 한 마을에 사는 이웃주민, 아저씨, 삼촌, 언니, 오빠, 누나, 애인이고 싶을 뿐이지 않을까? 그 역할을 수행하는 충분한 고통과 의무를 지고 싶지 않을까? 인권교육이 개인의 고통과 욕망을 넘어, 고통과 의무, 권리와 역할까지 공유할 수 있는 객관성과 용기, 자기 반성,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하늘의 이치를 보면서 발 앞에 우물에는 빠지지 않으려면 말이다. 인권 앞에 무기력한 인권교육은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토론 1

## 장애인권교육 현장에서의 논의와 과제

— 장애인권교육,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

조 은 영(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sup>18)</sup> 활동가)

만일 당신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것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 버나드 쇼 —

### ■ 들어가며...

사회가 장애를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존의 방법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확산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논의할 장애인권교육은 큰 틀에서 볼 때 현재 사회에서 장애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의미를 지녀야 할 것인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물론 장애와 관련된 교육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육을 들라면 ‘장애 이해 교육’ 또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교육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시행됐고, 그동안 장애를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 장애에 대해 알리고 사회 속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했고 결국 시혜와 동정의 시각 안에 머물면서 장애인의 공존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경우가 많았다.

18) 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는 2007년 장애인권교육가 양성을 위한 모임으로 시작해 장애인권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모임으로 자리 잡았다. 장애인권교육은 물론 장애인권교육워크숍, 장애인권교육메뉴얼 작성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노들, 인권교육센터 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등(가나다 순)이 활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혜와 동정의 시각에 기반해 장애의 공존의 추구할 경우 장애인은 수동적 위치, 2등 시민의 위치를 벗어나기 어렵고, 교육의 결과나 성과 역시 장애를 둘러싸고 형성된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 관련 교육에 대한 고민은 장애 관련 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그때 떠오른 개념이 ‘인권’이었다. 흔히 이야기하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은 시혜와 동정을 넘어 사람 대 사람의 동등한 관계로 장애인을 바라보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 관점에서 출발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재 장애계 내부에서 장애‘인권’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촉발된 배경이자 이번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본 토론자는 이번 토론회가 인권교육 현장을 진단해보는 마당으로 마련된 자리인 만큼 발제문에 대한 간략한 견해를 밝히고 토론자가 생각하는 장애인권교육과 장애인권교육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 ■ 발제자의 문제인식에 대한 공감

이번 토론회가 인권교육 현장을 진단해보는 자리인 만큼 발제자는 발제문을 통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장애인권교육의 상황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례와 당사자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섬세하게 짚고 있다. 본 토론자는 장애인권교육의 현재 상황에 대한 발제자의 인식에 상당부분 공감한다. △인권교육의 상품화 위험성 △‘장애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의 혼란 △장애인당사자에 의한 혹은 당사자와 함께 진행되는 인권교육 방법 등은 토론자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다.

그런데, 발제자가 제시한 이러한 문제의식들의 맥을 따라가 보면 결국 우리는 장애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장애인권교육이 가져야 할 원칙과 갖춰야 할 요소가 무엇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토론자는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이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여기에

제시하는 내용은 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에서 2년간 진행된 워크숍 결과물 중 일부라는 점과, 완성된 안은 아니며, 언제든지 논의의 여지가 열려 있음을 밝혀둔다.

## ■ 장애인권교육,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19)

### 1. 인권교육이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교육

일반적으로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권리에 대한 존중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존엄하며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러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지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 깊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을 인권교육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 그리고 동등한 관계는 권력의 차이를 조정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권교육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억압을 건드리는 교육, 인권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변화의 힘과 열망을 일깨우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다.

결국 인권교육이란 기존 질서 유지에 기여해 온 침묵과 체념, 굴종의 문화에 도전하는 교육이자, 인권을 침해하는 구조와 문화에 저항하는, 실천을 북돋우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과 갈등, 혼란을 기꺼이 끌어안아야 하는 교육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밑바탕에는 언제나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진 힘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깔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곧 인권교육이 가진 힘과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

19) 본 자료는 본 토론자가 지난 2010년 3월 11~12일에 진행된 장애인권교육워크숍 ‘장애인권교육의 전설을 만나다’ 자료집에 ‘장애인권교육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 장애인권교육,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실었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 2. 장애를 억압하고 있는 구조를 깨는 장애인권교육

장애인권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장애인권교육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장애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억압들을 드러내는 작업이자, 여기에 판지를 거는 교육이다. 그리고 장애인권교육은 장애인을 억압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장애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나 인식의 틀거리를 바꿔내는 작업이다.

### ○ 장애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는 교육

장애인권교육의 바탕에는 그래서 장애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즉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모델에 따르면 장애는 특별한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쉽게 말해, 장애인은 자신에게 있는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된 건축물,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책, 청각장애인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막이나 수화 없이 방송되는 뉴스나 드라마, 지적장애인은 이해할 수 없는 글로만 된 사용설명서나 작업지시서 같은 것들 때문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는 것이다. 즉 사회적 모델은 문제의 초점을 장애인 개인이 아니라 사회구조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장애를 바라보면 장애는 정해지거나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 속에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태도 및 환경적인 장벽과 개인의 신체구조적 특성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만들어진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장애인권교육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다.

### ○ 장애인의 차이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식하는 교육

그리고 장애인권교육에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역시 그 바탕에 녹아 있다. 즉,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자립에 대한 존중이 녹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존엄성은 물론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해, 장애인 개인의 자율 및 자립의 중요성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권교육이라면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이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장애인의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하도록 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로 정의한다. 물론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역시 장애인권교육이라면 중요시하는 원칙이다. 또,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향유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증진이 장애인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고 사회의 인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하는 토대라는 인식 역시 공유하고 있고 장애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적인 안녕과 다양성에 대한 장애인들의 가치 있는 현재의 기여 및 잠재적 기여를 인식해야 한다. 장애인권교육이라면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기회균등과 접근성,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의 존중과 정체성 유지에 대한 권리의 존중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 동등한 관계 속에서, 보편적 인권에서 출발하는 교육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권교육은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거나 장애인을 대하는 에티켓을 가르치는 교육 특히, 장애인에게 친절하도록 장애인에게 양보하도록 하는 교육과는 분명히 다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보통의 장애인 관련 교육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거나 이러한 장애인들의 인식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장애 이해나 인식개선의 대부분이 구조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의 시선을 견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장애인권교육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장애인 역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 개념에서 출발해 장애에 대해 사회가 깔고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으려 하는 것이다.

장애인권교육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서 출발해 장애인권을 말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의 교육경험을 통해,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과 인권에서 출발해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끌어낼 때,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장애인의 인권과 연결지을 때, 교육참여자들이 장애인을 대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보편적인 인권 속에서 장애인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장

애인권교육이라면 단순히 장애인 인권만 이야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출발해 장애인권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권교육 네트워크의 생각이다.

### ○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풀무질 하는 교육

그리고 장애인권교육이라고 해서 장애인의 권리만 주장하는 교육이 아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보편적 인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권은 소수자 인권과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연관성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장애인권교육은 장애인의 해방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해방을 함께 추구하고 연대하도록 풀무질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면에서 발제자가 지적했듯이 장애인에 관한 모든 교육이 인권교육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 당사자라든가, 혹은 장애인 관련 전문가가 장애인권교육의 전문가로 등치될 수 없는 것이다.

## 3. 장애인권교육에 필요한 것들

그러면 이러한 장애인권교육에는, 그리고 장애인권교육가에게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 ○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애인권교육은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과 인권에서 출발해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끌어내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이해는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겠지만, 장애인권교육가는 인권에 대한 지식을 넘어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힘,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 그래서 단순히 ‘정리된’ 인권을 알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인권을 정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

와 질서를 만들어내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의 관점을 통해 여러 소수성과의 관계 속에서 장애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 장애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기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장애인권교육인 만큼 장애인권교육가는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며, 장애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기준 역시 인권에 대한 이해처럼 잘 익히고 있어야 한다. 장애와 관련된 패러다임이나 국내외 인권기준은 장애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준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장애인권교육가는 단순히 기준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준들이 만들어진 맥락을 살펴보고 장애인권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논리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논리들을 어떻게 뚫고 나갔는지 역시 살펴본다면, 교육을 진행하면서 부딪히는 저항이나 혼란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 장애인의 구체적 현실과 현장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권교육가는 장애인의 구체적 현실과 현장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권교육가가 현장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장과의 밀착은 인권교육이 생명력을 갖도록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권 침해 사례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들은 그저 텍스트로 박제화 된 인권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 숨 쉬고 있는 ‘장애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이렇게 살아있는 ‘장애인권’을 전할 때 교육참여자들은 변화를 꿈꾸고 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 4. 장애인권교육을 진행할 때 생각해야 할 것들

장애인권교육이라면, 내용만이 아니라 진행 역시 달라야 한다. “인권을 무시하는 방법으로는 인권을 가르칠 수 없다.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은 인권교육에서 내용만이 아니라 이를 전하는 방법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

○ 인권교육의 주인공은 참여자입니다.

따라서 우선, 장애인권교육가에게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 더 나아가, 인권교육의 주인공은 참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어떤 인권교육이든 인권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가져야 할 자세다.

교육참여자가 장애인 당사자라면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경험을 인권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그동안 억눌려있었던 열망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보통 교육참여자가 교육과정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인권교육이 자주 참여적 형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유다.

비장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육참여자가 비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과 경험을 인권의 언어로 재해석 하는 과정을 겪어야 다른 사람의 삶 역시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결국 참여자의 삶과 경험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밑바탕이자 좋은 교육자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삶과 경험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인권교육은 매번 새로울 수밖에 없고, 교육참여자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권교육이 정해진 프로그램이나 고정된 틀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다.

그중에서도 장애인권교육에서는 특히 장애와 어떻게 관계 맺고 있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권교육가는 당사자인가, 아니면 가족인가, 혹은 장애인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등등 장애와 관계 맺고 있는 형태나 그 과정에서의 경험을 잘 살펴보고 읽어낼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형태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장애인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교사와 활동보조인은 삶과 경험이, 그리고 그 속에서 장애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교육참여자의 삶에 대한 이해나 존중 없이 단순히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져다 쓰는 것으로는 결코 인권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장애인권교육활동가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익혀 참여자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 교육참여자가 장애인 당사자라면, 이러한 교육기획에는 장애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 참여자의 욕구와 기대를 읽어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좋은 장애인권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가에게 참여자의 욕구와 기대를 읽어내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흐름에 따라 애초의 계획을 기꺼이 생략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융통성과 창조성도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장애인권교육의 주인공은 교육참여자이기 때문에 교육은 교육참여자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정해진 형태의 일방적인 교육은 실질적인 변화나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실질적 변화나 실천은 교육자와 교육참여자 사이에 소통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인권교육에서는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교육자와 참여자 혹은 참여자 간의 소통을 중시한다.

소통은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경험을 경청할 때 시작된다. 따라서 교육가는 전문성이나 교육자임을 내세우면서 가르치려하거나 심판자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자주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교육참여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교육가가 어느 한 구석이라도 지니고 있게 되면 교육가와 교육참여자 사이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교육의 과정이 서로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교육참여자의 삶과 인권을 이야기하더라도 이는 장애인의 인권을 이야기하기 위한 수단 혹은 절차로 다뤄지기 쉽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참여자의 삶과 인권을 장애인의 인권을 이야기하기 위한 수단 혹은 절차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장애인교육의 핵심을 알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장애인권교육이 참여자들의 삶과 인권을 존중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해서 여기에만 매몰돼서도 안 된다. 교육참여자들이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이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장애인의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 자율 및 자립에 대해 존중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억압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변화를 열망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서 교육가는 주인공이 아니라 연출자로서 교육참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인권교육가를 교육참여자들의 교육적 탐험을 함께 하는 동료이자 안내

자라고 말하기도 한다. 교육가가 이러한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면 교육은 방향을 잃고 좌초할 수 있다.

○ 스스로를 성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진행할 때 교육가에게는 스스로도 인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기존 사회의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잘못된 기꺼이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 과정에서 교육가와 다른 생각, 심지어는 반인권적인 생각들과 마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옳고 그름을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도전적인 문제제기를 던질 수 있는 인내심과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인권교육 참여자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놓치지 않는다면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가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권교육가에게는 요구되는 것들은 많다. 진지하지만 활력과 유쾌함을 잃지 않는 교육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지와 순발력,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열정과 카리스마, 교육참여자들을 모두 아우르는 포용력과 친화력, 재미있고 새로운 인권교육을 기획할 수 있는 상상력과 기획력, 그리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등. 그러나 누구도 이러한 자질이나 자세를 모두 갖출 수는 없다. 아마도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할 때의 긴장감과 두려움을 이기고 교육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한다. 두려움을 이기고 교육의 기회에 자신을 던질 수 있다면 그 속에서 교육활동가는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5. 앞으로의 과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통 인권교육의 삼박자라고 하는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인권을 통한 교육은 장애인권교육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내

용들은 이 자리를 통해,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침식되고 다듬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에서 다루지 못한, 그리고 앞으로 더 고민이 필요한 것들도 있다. 그중 하나가 발제자가 지적한 장애인 당사자가 하는 장애인권교육에 대한 고민이다.

○ 장애인 당사자 직접 교육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발제자의 지적처럼 장애인 당사자가 진행한다고 해서 저절로 장애인권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제시한 원칙과 요소가 교육에 녹아 있을 때 비로소 장애인권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요소를 갖춘 교육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진행된다면 그것은 의미뿐만 아니라 교육의 효과의 측면에서도 그 결과는 비장애인이 진행하는 것과 확연히 다를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교육안이나 기법들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됐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가 활용하기 적절한 교육안과 기법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시각, 청각,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나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같이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도 장애인 당사자가 강사로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장애인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특별히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사례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당사자의 직접 교육이나 강사양성교육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각 장애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이 함께 짝을 이뤄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장애인권교육대상자 = “잠재적 가해자”라는 인식을 깨는 일이 필요하다.

또다른 고민은 장애인권교육이 인권침해예방 교육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마치 잠재적 가해자들을 상대로 한 교육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침해예방교육이라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제 장애인권교육은 그것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것인가를 교육참여자와 함께 모색하는 교육



이다. 장애인권교육이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교육으로 인식되는 한 제대로 된 장애인권교육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이미지를 바꿔내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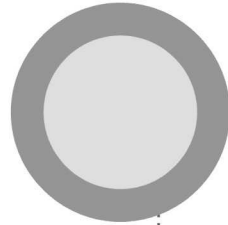
아마도 이는 아마 장애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전반에 존재하는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반 인권에 비해 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경우 당사자와 아닌 사람으로 구분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훨씬 강하다는 느낌이 든다. 실제 이러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많다.<sup>20)</sup>

앞에서 이 ‘가해자’ 인식에 대해 짧게 다뤘는데, 이러한 인식 전환은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만 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다. 교육참여자 역시 이러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

20) 가장 최근 예로는 지난 4월 20일자 쿠키뉴스를 들 수 있다. 이 뉴스는 지난해부터 개인정보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건시설은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인권교육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한 이사의 말을 인용하고 있었는데, 이 이사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종사자들에게 알려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에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나아가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는 선량한 이들을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말은 사람들이 장애인권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참고 자료



# 인권과 시민권 : 개념과 현실

최 현(제주대학교 사회학과)

## 1. 머리말

오늘날 인권은 대단히 인기 있는 개념으로 좌우 이념과 사상을 떠나 거의 모든 사람이 일단 동의하는 “보편적 가치” 또는 “지배적 이념”이 되었다. 특히 인권은 20세기 후반 냉전 종식 이후 동유럽으로 확대되었고, 이제 전세계를 지배하는 일종의 ‘지구적 가치’의 지위를 확보했다. 인권을 부정하면 사람으로 취급 받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모든 사회적 투쟁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촛불집회 참가자는 인권의 이름으로 촛불집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주변 상가주인 역시 인권의 이름으로 촛불집회 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인권의 이름으로 반인권을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권이 중요하며 어떤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 우리는 인권의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인권과 시민권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인권의 본질적 요소와 인권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그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1) 인권(Human Right)

권리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위”이다. 그런데 권리는 원래 영어의 right를 번역한 용어다. 영어의 rights에는 “도덕으로 올바른 것, 합리적인 것, 합법적인 것, 정당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19세기 초반 일본에서는 권리라는 말 대신에 정직(正直)이나 염직(廉直)이라는 용어가 right의 번역어로 사용되었으며, 19세기 후반부터 일본과 중국에서 권(權) 또는 권리라는 용어가 right의 번역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right라는 용어에 올바른 것과 정

당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은 권리가 자연법적 연원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다음 장에서 우리는 인권의 자연법적 연원을 살펴볼 것이다). 자연법 사상에 따르면 법은 개별 인간이나 특정한 집단 아니라 자연(이는 절대자 또는 신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었다)에 의해 규정되며, 보편적으로(다시 말해 동일한 모든 대상과 관계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다. 이로부터 근대 계몽주의자들은 절대자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된 어떤 지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리이고 이것은 이성적이며 올바른 것(right)이라는 사상을 발전시켰다. 이런 점에서 권리는 인간에게 적용된 자연법이고, 자연법에 따라 모든 인간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성적이며 올바른 것이다. 자연법은 라틴어로 jus naturale였는데, 여기서 자연법(natural law)과 구분되는 자연권(natural right)라는 개념이 근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분리되었다. 서양의 인권 개념은 이처럼 인간의 권리가 자연법에 따라 인간이 “자연스럽게, 정의로운 상황에서, 정당하게 가지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발전했다. 그리고 인간이 자연스럽게 가지는 어떤 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을 가졌다(이봉철, 2001; 조효제, 2007).

## 2) 시민권(Citizen Right)

근대 시민사회의 발전과 함께 신이 내려준 고정불변의 질서대신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세속적인 사회적-정치적 질서를 형성하려고 했던 계몽사상가들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자유 또는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인간을 그러한 질서의 전제이자 토대로 제시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계몽사상가들은 천부인권설(또는 자연권설)에서 이러한 권리의 주체인 근대적 인간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러한 인권 사상의 발전은 근대 사회의 철학적 도덕적 기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자연이든 하늘이든 신이든 그 어느 것도 실제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지는 못했다. 현실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 탄생한 근대 국가였다. 시민 혁명은 절대주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계몽주의자들의 인권사상을 수용하여 새로운 헌법, 정부와 국가를 만들어 인권을 보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근대 국가는 특정한 지역에 사는 특정한 시민들에

계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었을 뿐,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었다. 따라서 현실 역사 속에서 인권은 시민권(citizen right)의 형태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인권과 시민권이라는 용어가 동시에 탄생했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인권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국회가 1789년 헌법 서문으로 채택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선언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Citizen>인데 여기서 인권(the Rights of Man)은 시민권(the Rights of Citizen)과 동일시되고 있다 (Morange, 1999).

이런 맥락에서 시민권은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서로에게 또는 공동체와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권은 국가라는 정치적 기구 및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된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계몽주의자들의 사상에 따라 근대 국가는 인권을 실현하기 시작했지만, 근대 국가가 실현한 인권은 매우 제한된 것이었다. 우선 계몽주의자들이 제시한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었지만, 근대 국가는 자국의 시민에게만 배타적으로 인권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적은 사람들과 여성은 그 시민권에서 조차 배제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근대 국가는 여성과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권이 도덕적-당위적-추상적 차원에서 인간의 권리에 대한 논의였다면, 시민권은 그것의 제도적-법적-현실적 보장이었으며, 시민권의 발전은 다시 인권에 대한 이해와 논의를 발전시켰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제도로 발전한 시민권은 추상적 논의에 불과했던 인권이 충분히 예상하지 못 했던 인간의 권리의 문제를 드러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이슬람계 여자 어린이가 학교에 히잡(hijab)을 쓰고 갈 권리가 있는가라는 문제는 정교분리, 남녀평등과 종교의 자유 및 다문화적 권리라는 민주사회의 주요 원칙들이 충돌하는 인권 또는 시민권과 관련된 현대 사회(특히 다문화 사회)가 결정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계몽주의자들의 인권 사상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계몽주의자들은 현실 속에서 경험하지 않았고 따라서 논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권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갈등과 논쟁은 인간에게 필요한 권리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 그리고 반대로 인권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발전하면 그에 따라 국가들이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권리도 내용적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시민권은 특

정한 국가가 자국의 시민들에게 보장하는 인권이므로 시민권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각 나라의 민주발전이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불균등하게 발전했다. 최근에는 지구 시민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권을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구 시민권이 실현된다면 이상으로서의 보편적 인권이 제도적으로도 현실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논의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일 뿐이며 지구 정부가 제도적으로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수 세기가 필요하다.

## 2. 근대 국가 및 시민권 제도의 형성과 국민의 문화적 정체성

### 1) 근대 국가 및 시민권 제도의 형성

천부인권설이 프랑스혁명 이전부터 발전해 왔지만, 하늘이나 신 또는 자연이 인간에게 권리를 보장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현실에서 인간의 권리는 근대 국민국가에 의해 시민권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보장되었다. 국민국가는 문화공동체와 정치공동체의 일치, 다시 말해 국가의 문화적 통일성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극히 예외적인 한두 개 국가를 빼고 거의 모든 국민국가가 이러한 지향을 실현하지 못하지만, 국민국가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국민은 문화공동체를, 국가는 정치공동체를 의미한다. 이처럼 근대 국가가 국민국가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은 그것이 탄생했던 시기 서유럽의 역사적 조건 때문이었다. 근대 국민국가 형성 당시 사회변동의 핵심적 동력이 되었던 자본주의는 가능한 한 더 넓은 상품 시장과 이동 및 대체가능한 따라서 자유롭고 동질적인 노동력,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국가를 필요로 했다. 하지만, 당시 대체할 수 있는 동질적 노동력을 생산해 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던 최첨단 대중매체는 신문과 책 등 활자 인쇄물에 지나지 않았고 이러한 매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통망도 제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상품 및 노동 시장과 그것을 보호하는 국가는 기존의 문화적 동질성에 의존해야 했고, 그 결과 시장과 정치공동체는 지리적 특성과 그것에 의해 구획된 전통적인 문화적 특성에 의해 구획되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명목상으로나마 존재하고 있던 신성로마제국이 종말을 고



한 후,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대략 200년 동안 유럽에 하나의 통일 공화국을 건설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정치적·경제적 공동체의 경계는 문화적 공동체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게 되었고 국민국가는 전형적인 근대 국가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유럽과 아메리카에는 영국을 선두로 미국과 프랑스 등의 국민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19세기 말에 이르면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대부분이 국민국가 체제에 편입되었다. 유럽의 제국주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신대륙으로 팽창해가자 국민국가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1919년 성립된 베르사유 체제는 국민국가를 세계질서의 기본 단위로 승인했다. 따라서 근대적 세계에서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인간은 우선 특정 국민국가의 시민이 되어야 했다. 특정한 국민국가의 시민이 되지 못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채 살아가거나 자신을 시민으로 보호해 줄 국가를 건설해야만 했다. 따라서 1차 대전 이후 자신의 국가를 가지지 못한 식민지·반식지의 주민들 사이에 민족주의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으며, 자신을 보호해줄 국가를 형성한다는 민족주의는 터무니없는 이념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념이 될 수 있었다.

국민국가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시도는 국민국가 안팎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근대 국민국가는 시민권 제도를 확립하여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적 동질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국 시민의 범위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여권과 다양한 신분증, 그리고 국민등록제도가 개발되어 자국 시민들과 외국인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 영토 내에서 외국인과 자국 시민의 경계를 분명히 했다. 동시에 국민국가는 국제 협약을 통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자국의 시민과 외국인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즉, 1930년 헤이그 협약은 무국적자와 함께 이중국적자를 배제하는 원칙을 수립했고 이것은 국민국가를 기초로 하는 베르사유 체제를 뒷받침했다.

## 2) 국민적 시민권 제도와 국민적 정체성 형성

근대 국가의 성원은 권리의 주체로서 국민(national) 또는 시민(citizen)으로 불린다. 이와 달리 봉건적 국가와 절대 왕정 국가 같은 전근대적 국가의 성원은 통치의 대

상이나 국왕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백성 또는 신민(subject)이라고 불린다. 신민은 국가에 대해서 조·용·조(租·庸·調) 등의 의무는 가지지만 권리는 없는 존재였다. 근대 국가를 통해 통치 대상에 지나지 않던 신민이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듭남을 가능하게 했던 핵심요소가 바로 시민권 제도다. 근대 국가는 시민권 제도를 통해 국민의 경계를 확정하고, 조세제도와 모병제도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고, 그 자원을 이용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했다. 곧 모든 국민에게 안전과 기본권, 참정권,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동질성과 국민 정체성을 형성했다. 평등한 시민권과 문화적 동질성은 국민들이 동료 시민들에 대해 유대감을 느끼게 했으며, 국가 공동체에 소속감과 충성심을 가진 국민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했다. 시민권 제도는 개인으로서의 시민이 국민이라는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identify)하게 만든 결정적 조건이었다. 따라서 시민권 제도가 국민 정체성과 국민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시민권 제도를 근대적 국민 정체성의 기초로 간주한다. 하지만, 국민 정체성 형성 과정은 국민국가가 외국인과 자기 국민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외국인을 소유권, 선거권, 피선거권, 사회보장 등 자국의 시민들이 가지는 권리로부터 배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민과 비시민을 구분하기 위해 신분증과 등록제도를 정교하게 발전시켰고,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었다. 국가는 이제 더욱 효과적으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자국의 국민에게는 더 많은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는 자국의 시민들에게만 신체의 자유와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뿐만 아니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정치적 권리와 교육과 일자리, 복지 등 문화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시민권 제도를 공고하게 만들었다. 시민권 제도에는 신분등록제, 시민들 사이의 법적 평등, 표준어 교육, 역사 및 지리 교육, 전통 문화 보호제도, 상호부조와 복지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시민권 제도는 평등한 기회, 법적 지위, 교육을 통해 생활 속에서 국민 공동체 이미지를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표준어 보급과 전통적 대중문화의 보호 속에서 성장한 언론 출판 등 대중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이러한 공동체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시민권 제도가 근대적 국민을 형성하고 재생산한다.

### 3) 근대적 시민권 제도의 발전

마셜(Marshall, 1964)은 사회적 소수자의 투쟁이 시민권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켜왔는가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다. 그는 특히 노동자계급이 영국에서 시민권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켰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셜에 따르면, 영국에서의 시민권 제도의 발전 과정은 3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인 18세기 영국에서 시민권은 자유권적 기본권(civil rights)을 의미했을 뿐이었다. 두 번째 시기인 19세기에 시민권은 정치권(political rights)을 포함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20세기에 시민권은 사회권(social rights)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특히 20세기에 시민권이 사회권으로까지 확대되는 과정은 시민권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했다. 즉, 19세기까지 시민권 제도는 개인으로서의 시민들이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데 한정되어 있었으나, 20세기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시민권 제도는 경쟁으로 생겨난 경제적·계급적 불평등이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했다. 19세기까지 시민권 제도가 개인주의, 보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맹신하고 있다면, 20세기 중반 이후 현실적 요구 때문에 계급이라는 시민들의 경제적 소속 집단을 고려함으로써 개인주의와 보편주의에서 벗어난 시민권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인정되고, 최저임금이 보장되었으며, 노동권과 최저생활보장권 등이 시민권에 포함되었다.

개인주의적-보편주의적 시민권 제도 사상은 특권층에 대한 반대를 통해 발전했고 시민을 출신 계급, 지역, 인종, 성에 따라 차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20세기에 인류는 보편주의적 시민권 제도가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계급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사회권을 처음으로 도입한 1919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사회·경제적 강자의 경제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제한 규정을 도입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는 사회권을 보장한다”라고 ‘계급 차별적’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요구에 따라 사회권이 도입되는 등 개인주의적-보편주의적 시민권 제도에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시민권 제도의 개인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근본적 도전은 이후의 과제로 넘겨졌다.

### 3. 집단인지적(group-differentiated) 또는 다문화(multi-cultural) 시민권 개념의 발전

#### 1) 페미니즘과 집단인지적 시민권의 발달

자유주의적 권리 개념을 뛰어넘는 집단인지적 권리 개념이 탄생하는 데에는 페미니스트들이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노동자계급에 이어 페미니스트들이 자유주의적 시민권 제도의 문제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시민권에 대한 페미니스트적 비판의 핵심은 자유주의적 시민권이 현실과 유리된 개념이라는 것이었다. 자유주의에서 시민권은 보편주의라는 이름으로 계약적인 관계, 시장에서의 교환, 그리고 개인의 독립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권은 가부장제로부터 자유롭고, 시장에서 교환할 것이 없으며, 아이를 양육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가 계급에 속하는 남성에게 필요한 권리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들은 여성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자유주의적 시민권 제도는 여성을 실제적으로는 무권리 상태에 버려두었다. 예를 들어, 여성들에게는 남성들과는 달리 모성, 양육, 섹슈얼리티, 자기 몸의 통제할 권한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1930년대 일본에서 여성들은 제국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받았고, 현대 미국에서도 1970년대 중반까지 여성들은 낙태를 금지 당했고 현재도 낙태권을 제한 당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시민권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성적 자기결정권, 자기 몸에 대한 통제권, 임신·출산 등 재생산권, 임신 선택권은 현재 여성들이 현실 생활에서 인간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살아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들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여성의 특성, 여성의 가치, 여성의 활동, 여성의 복합적인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는 시민권 제도를 구축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은 이처럼 여성들에게 필요한 권리들의 목록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의 시민상과 시민의 덕성을 상대화하려는 노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초기에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가부장적 구습, 남녀차별적 관행을 타파하고 교육, 고용, 승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적·제도적 차별만 없어지면 여성이 남성과 같이 완전한 시민권(full citizenship)을 확보할 수 있

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사회적·심리적 차이들에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는 접근이 결국 교육, 고용, 승진 등에서 남성적 덕목이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는 상황을 유지시킴으로써 사실 상 여성들을 불공정한 경쟁에 내모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제 여성과 남성은 육체적·사회적·심리적으로 다르며, 남성과 여성은 다른 권리를 가져야 하고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종합한 기준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시민권 이론에서 여성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정서적 배려, 돌봄, 그리고 상호의존은 가족생활과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시민들이 활동하는 공적 영역에서는 부정적인 것 또는 적어도 무가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여성의 특성이 시민권의 핵심적 전제인 이성적 사고나 군사적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반면에 감정통제나 과묵함, 육체적 힘과 용기 등 남성적 특성은 시민이 갖춰야 할 덕성으로 간주했다. 페미니즘은 여성 문화와 여성성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성(gender)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들이 육체적이고 감성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상호의존과 돌봄의 가치를 시민권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주의적-보편주의적 시민권이 여성의 몸(body)를 근거로 여성들의 시민권을 제한해왔는데, 페미니스트들은 인류의 절반이 넘는 여성의 몸을 고려하지 않는 시민권은 더 이상 제대로 된 시민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시민권은 이제 여성들이 가진 차이와 특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에 의한 남성중심의 개인주의적-보편주의적 시민권에 대한 비판은 매우 근본적인 것이었다. 사실 영국에서의 1867년 개혁법은 정치권을 성인 남성 노동자의 35%에서 40%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는데, 이 법의 심의 과정에서 정치 엘리트 사이에 있었던 논쟁의 핵심적 쟁점은 계획된 시민권의 확대가 영국 시민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훼손시키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하원의 한 토론 참가자는 가장들에게 정치권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를 지금보다 덜 영국적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여성에게 정치권을 확대하는 것은 여성들의 신체적 특징에 따른 '자연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하고 영국 시민의 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심지어 영국에서 사회권을 보장하는 토대가 된 1942년 보고서를 썼던 베버리지조차 여성은 신체에 따른 '다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혼한 여성들이 실업에 처한 경우 남성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필

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주의적-보편주의적 시민권은 보편성의 이름으로 여성의 정신적·문화적·신체적 특성을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여성에게 불이익을 강요했던 것이다. 영(Young, 1998) 같은 페미니스트들 이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여성적 특성을 고려한 집단인지적 시민권이 더욱 공정한 시민권의 형태라고 주장했다.

## 2) 정체성 집단과 다문화적 권리

다문화적 권리는 크게 2가지 의미를 지닌다. 원래 다문화적 권리는 문화적으로 단일한 국민국가의 시민이 주류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국가의 시민 중에서 문화적 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또 그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되었다. 국민국가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문화적 통일성을 전제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러한 국민국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표준어를 확정하고 이것을 교육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보급하고 관공서에서 표준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었다. 따라서 국민국가의 언어적 소수자에게 다문화적 권리는 사실 상 교육을 통해 다수자들의 언어를 배우고 다수자들이 지배하는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곧 “동화될 권리”에 불과했다. 동화되지 않을 경우 개인의 결함으로 차별받는 것을 감내해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에 다문화 사회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소수자의 다문화적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많은 나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페미니스트들이 발전시킨 집단인지적 권리의 개념은 문화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왜냐하면 집단인지적 권리는 집단들은 노동자계급과 달리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완전한 권리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정체성 때문에 배제되는 집단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따라서 최근에는 집단인지적 권리 중에서도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권리를 다문화적 권리로 구분하고 있다.

### (1) 다문화적 권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심원한 다양성과 문화적 다원주의로 특징 지워진다. 과거에는 이러한 다양성이 정상 시민 모델에 따라 무시되거나 억제되었다. 예를 들어 서유럽과 미국에서 정상 시민이란 특정 국가의 민족 문화를 체화한 장애가 없고 이성애자인 백인 남성

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정상 시민에서 벗어나는 장애인, 유색인종, 여성, 원주민 등은 배제되고 주변화되거나 동화되었다.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소외되었던 이러한 집단들은 정상 시민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에서 자신들을 배제하거나, 주변적 존재로 취급하고, 동화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려 하지 않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다름과 정체성을 포용할 새로운 시민 모델과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가 시작되었다. 학의 집에 초대받은 여우와 여우의 집에 초대받은 학에 관한 이솝의 우화는 정체성을 인정해달라는 대한 요구가 본질적인 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여우에게 맞춰진 사회에 들어간 학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 다양한 구성원을 가진 사회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다문화적 권리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킨다.

다문화적 권리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고 다문화적 권리를 정치공동체가 보장하는 것은 전에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소수자 집단에게 교육과 정치적·문화적·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통 문화(common culture)’와 ‘공통 정체성(common identity)’, 그리고 ‘상식 또는 양식(common sense)’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의 통합을 강화한다. 일반적으로 소수자 집단의 다문화적 권리에 대한 요구는 통합(inclusion)에 대한 요구이다. 배제된 집단들은 더 큰 사회에 통합되기를 원하며 그들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수용(accommodation)은 통합을 촉진한다. 민주주의 하에서 이러한 소수자 집단에게 다수자들이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다문화적 권리(특정 소수자들에게 공동체로서의 대표권을 인정하여 의회에 의석을 배당하는 일 등)은 국가의 단합(unity)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의 참여와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특히 다문화적 권리는 지구화와 지역공동체의 형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2) 다문화적 권리의 주요 내용

김리카(Kymlicka, 1995)는 다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킨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기 위해 다문화적 권리는 소수 종족을 보호하는 세 가지 권리를 보장하는데, 여기에는 (1) 자치권과 집단 대표권, (2) 다문화권과 (3) 차

별보상권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자치권과 집단 대표권은 소수 종족이 스스로를 위해 자유롭게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일정한 지역적 관할권 또는 정치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소수 종족이 자신의 대표를 참여시킬 권리다. 다문화권은 소수 종족이 주류 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차별이나 불이익의 위험 없이 자신들의 신체적·문화적 특징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다. 마지막으로 차별보상권은 소수 종족이 주류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기회를 제공하거나, 과거 또는 현재에 소수 종족으로서 겪어야만 했던 차별을 보상하고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소수자 집단에게 일정한 특권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소수 종족에게 국회 의석의 일부를 할당하는 제도나 소수 종족의 성원들에게 대학 입학과 공무원 취업 문턱을 낮춰주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등이 차별보상권과 관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치권이나 집단 대표권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소수 종족이 자기 조직화를 통해 집합적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는(empowerment) 느낌을 가지게 하고, 구체적 경험을 통해 다양한 집단으로 이루어진 정치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성찰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수 종족이 진정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전제 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 권리가 정치공동체 또는 국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소수 종족을 지배하기 위한 방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소수 종족에게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는 거부권(veto power)이나 분리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정치공동체 또는 국가가 소수 종족의 거부나 분리를 피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소수 종족이 정치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집단 대표권과 자치권은 정책이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집단 대표권과 자치권은 소수 종족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소수 종족이 자신이 속한 정치공동체에 대해 소속감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 4. 한국에서의 다문화적 권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중에 자치권 등은 아직까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화적 소수자들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차별보상권, 다문화적 권리와 집단대표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집단대표권이다. 왜냐하면 집단대표권이 실현돼야 수요자 중심에서 다문화적 권리와 차별보상권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집단대표권은 국회나 지방의회의 의석 중 일부를 귀화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귀화자와 영주권자들의 이해를 대변할 조직이 먼저 생겨나야만 한다. 따라서 먼저 귀화자와 영주권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조직이나 네트워크를 자치단체 수준에서 그리고 전국적 수준에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집단대표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집단인지적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윤인진과 김상학의 연구(2003)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장애인을 제외한 집단에게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같은 집단인지적 권리를 부여하는 정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권리 개념에 따라 집단인지적 권리를 일종의 역차별로 보는 가치관과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으로 집단인지적 권리를 수용하는 태도 위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화자나 영주권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집단이 힘을 모아 집단인지적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의석 중 일부를 다양한 소수집단에게 할애하는 제도적 개혁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5. 토론: 세계 시민권

오늘날까지 많은 국제적 분쟁은 국민국가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국민국가를 통합하고 여러 국민과 민족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나 지구공동체의 형

성은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이 평화는 소수 종족이나 민족, 국민을 억압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식으로 유지될 수 없다. 억압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화약고를 만들어내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동유럽의 “종족 분쟁”이나 “인종청소”는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이민자들의 인권 침해도 국민국가의 시민권 제도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 제도는 국민국가가 근대 사회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발전시킨 제도였지만, 최근에 학자들은 탈근대적 시민권 제도를 모색함으로써 초국민적 정치공동체와 세계 시민권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계 시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려는 노력보다 정치공동체 안에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수 민족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치 제도와 원리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초국민적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초국민적 공동체와 시민권 제도에 대한 상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초국민적 시민권 제도를 상상하는데 있어 국민국가 내에서 발전해온 집단인지적 시민권 제도, 다문화 시민권 제도, 영주권 제도 등 외국인의 권리 보호 제도 등의 현실적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윤인진·김상학. 2003.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학생 의식조사」. 『경제와 사회』 58:222-248.
- 이봉철. 2001. 『현대인권사상』. 서울: 아카넷.
- 조효제. 2007. 『인권의 문법』. 서울: 후마니타스.
- Kymlicka, Will.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New York: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 Marshall, T. H. 1964.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essays*. Garden City, N.Y.: Doubleday.
- Morange, Jean. 1999.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변해철 역. 서울: 탐구
- Young, Iris Marion. 1998. "Polity and Group Difference: A Critique of the Ideal of Universal Citizenship." Pp. 263-290 in *The citizenship debates: a reader*, edited by G. Shafi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